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홍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19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 박홍배·강득구·강훈식

김남근 • 김현정 • 민병덕

서영교 · 서영석 · 송재봉

이광희 • 이기헌 • 이상식

정진욱 • 한준호 의원

(총 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. 또한, 기관장 및 이사회 구성 시 노동자 대표의 참여가 미흡하여, 경영진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이 발생한 바 있음.

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이나 프랑스, 스웨덴 등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협 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.

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서울특별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지 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바 있음. 이 후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 사제 제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됨.

그럼에도 노동이사제 적용범위에서 기타공공기관이 배제됨으로써 도입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타공공기관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 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.

이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,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. 이는 노사 간 협력적 관계를 증진시키고, 공공기관의 책임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의 제목 "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운영"을 "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운영 등"으로 한다.

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6조의2(기타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임명) ① 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기타공공기관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구회의 비상임이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타공공기관 비상임이사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장 공기업・준정부기관의 운	제4장 공기업・준정부기관의 운
<u>ප</u>	영 등
<u><신 설></u>	제26조의2(기타공공기관 비상임
	이사의 임명) ① 기타공공기관
	의 비상임이사는 3년 이상 재
	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
	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
	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
	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.
	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지정 당
	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기타공
	공기관은 지정 후 3개월 이내
	에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을 선
	임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정부
	출연연구기관 설립・운영 및
	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
	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
	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
	법률」에 따른 연구회의 비상
	임이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해
	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
	<u>다.</u>

③ 제1항에 따른 비상임이사의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.